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61

발의연월일: 2024. 7. 25.

발 의 자:이수진・이기헌・민병덕

송재봉・송옥주・신정훈

서미화 · 전용기 · 장철민

김현정 · 백승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 금·특별공로금·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.

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나, 아직도 불가피 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 심의도 받 지 못한 경우가 있음.

이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해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0 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2항 중 "6개월"을 "5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보상금등의 신청) ① (생	제10조(보상금등의 신청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	②
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	
후 <u>6개월</u> 이내에 하여야 한다.	- <u>5년</u>